

시 정 결 과 보 고 서

대표자	성 명	생년월일(남/여)
	주 소	
시정내용	노동조합의 명칭	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(전국, 기관, 지역, 기타), 연합단체
	주된 사무소의 소재지	
	시정결과	

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시정결과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노동조합 대표자 (서명 또는 날인)

고용노동부장관(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) 귀하

※ 비고: 시정결과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합니다.